경제활력대책회의
20-2-3 (공개)

혁신성장
오늘을 바꾸고 내:일을 만든다

연안여객·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

2020. 2. 5.

금융위원회 · 해양수산부
한국산업은행 · 해양진흥공사

목 차

Ⅰ. 추진배경 ····· 1

Ⅱ. 연안여객·화물선박 현황 ····· 2

Ⅲ. 연안여객·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 ····· 3

Ⅳ. 향후 계획 ····· 7

Ⅴ. 기대 효과 ····· 7

Ⅵ. 참고 자료 ····· 8

Ⅰ. 추진배경

□ 국내 **연안여객**은 도서지역 **내륙이동**과 **관광** 등을 위해 연간 **약 1,500만명('18년말 기준) 여객**을 선박으로 운송하는 **주요 운송수단**

○ 100개 항로에서 **58개의 해운사**가 **166척의 여객선**을 운항하며 차도선·카페리 등 여객·화물 겸용선이 70%를 차지

* 연안여객선 분류 : (여객선)21척, (쾌속선)28척, (차도선)106척, (카페리)11척

○ 최근에는 해양레저에 대한 관심 증가와 도서지역 축제 활성화로 **섬을 찾는 인구가 증가**하여 여객선의 **역할**이 **더욱 부각**

□ **화물 선박운송**의 경우 전체 국내 **화물운송량**의 **82%***(무게기준)를 **담당**하는 **국가경제의 필수 기반산업**

* 국내 화물운송량('17년, 백만톤) : (철도)31.7, (해운)142.6, (항공)0.3

○ **780개의 해운사**가 **2,013척의 내항화물선**을 운항하고 있으며 예인선, 부선 등 소형선박이 68%를 차지

* 내항화물선 분류 : (화물선)356척, (유조선)291척, (예인선, 부선 등)1,366척

□ 이러한 내수선박의 중요성에 불구, **연안 여객·화물선박** 해운사의 **영세한 재무구조** 등으로 **노후선박 교체用 선박 신조**에 애로

* 20년 초과 선령 비율('18년말 기준) : (연안여객선) 22%, (화물선) 68% 수준

○ 현재 운영 중인 **연안 여객선박**의 경우 상당수가 **노후화된 해외 중고선**으로 구성

⇒ **연안 해상 안전성** 제고 및 **지역경제 활성화**를 위한 지원방안 필요

Ⅱ. 연안여객·화물선박 신조 관련 현황

1 연안 여객에 대한 안전성 강화에 따른 선박 교체 수요는 확대

○ **연안여객선**의 경우 **선령제한 강화**(카페리선의 경우 최대운항 가능기간 30년 → 25년)등으로 **선박 교체 수요**가 크게 증가

○ 최근 **수요조사 결과**, 선박 신조에 따른 **자금부담 경감**을 전제로 **약 59척**(선가 기준, 약 8,200억원)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

> **※ 연안여객·화물선박 해운사 대상 수요조사 결과**
>
> ○ 여객선 : 21척(선가 기준, 6,089억원), 화물선 : 38척(선가 기준, 2,142억원)
>
> * (조사기간)'19.11~12월, (조사방법)한국해운조합 수요조사, 산은 현장인터뷰 등

2 반면, 해당 해운사들의 영세성 등으로 은행 등 민간 선박금융 공급은 수요 대비 충분하지 않은 상황

○ 현재 일부은행을 중심으로만 **연안여객·화물선박 신조 관련 금융 취급**

○ 내수선박 신조 시 민간금융의 낮은 **담보인정비율**(LTV : 통상 선가의 약 50% 내외) 등으로 해운사들의 **초기 자금조달 부담**이 **큼**

○ 내수선박 신조 필요 자금규모 등을 감안할 때 **해당 해운사**들의 **영세한 재무구조*** 등으로 **자금 조달**에 **한계**

* 연안여객 해운사중 절반 이상 자본금 10억원 미만, 업체당 평균 보유선박 2.3척

3 재정사업을 통해 연안여객·화물선박 신조를 지원하고 있으나, 지원 규모 등에서 수요 충족에 한계

○ 연안선박 현대화펀드* 등 **재정사업**을 운영 중이나 수요조사 결과 나타난 **선박 교체 수요**를 **충족**하기 **어려운 상황**

* '16~'19년간 출자규모 1천억원, 카페리 선박 4척 旣 지원

Ⅲ. 연안여객·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

◇ **연안해운업 경쟁력 강화**를 위하여 **산업은행, 해양진흥공사**를 중심으로「**연안여객·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**」마련·추진

1 (지원 대상) 노후화로 선박 교체가 시급한 연안여객·화물선박

○ **노후화된 여객선** 및 **화물 선박**

- 「해운법」상 **내항여객운송업** 및 **내항화물운송업 면허** 보유 해운사가 **신규 발주**하는 **선박**

* '18년말 기준, 내항여객운송업 58개사, 내항화물운송업 780개사

○ **해상 안전성 제고**라는 지원방안의 취지 등을 감안, **신조**를 **원칙**으로 하되 선종에 따라 **중고선 지원** 가능

- 원칙적으로 **선령제한 연한 도래 예정 선박*** **우선 지원**

* (연안여객선) 선령 20년까지 운항가능하며, 1년씩 연장가능(카페리 최대 25년)
(내항화물선) 선령 15년 초과 선박의 화물운송사업 신규등록 제한

2 (지원 규모) 선박 교체 수요조사 결과를 감안한, 충분한 지원

○ **수요조사 결과**를 감안, **총 8,200억원 규모**의 **지원방안** 마련

ⅰ) **(연안여객선)** **6,089억원** (21척 x 척당 평균선가 290억원)

ⅱ) **(내항화물선)** **2,142억원** (38척 x 척당 평균선가 56억원)

< 선종별 수요조사 결과 >

연안여객선			내항화물선
카페리	쾌속선	차도선	화물선
9척(3,579억원)	5척(2,220억원)	7척(290억원)	38척(2,142억원)

3 (지원 방식) 재무구조가 영세한 해운사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초기 자기부담금 최소화 등 자금 부담 경감

○ **산업은행·해양진흥공사** 등 **정책금융기관 보증·대출** 등을 통해 **연안여객·화물선박 신조 대금**의 **80%**를 지원

i) **(선순위 60%)** 신조 대금의 **60%**를 **선순위**로 조달하고 **해진공**이 同 자금의 **95% 이상**에 대하여 **보증** 지원

* 연안해운사의 영세한 재무구조, 낮은 신용등급 등을 감안하여 **보증료 특별요율 적용**, **보증료 분납기준 마련** 등 **별도 특례 추진**

ii) **(후순위 20%)** 신조 대금의 **20%**는 **산업은행**을 통해 조달

iii) **(해운사 20%)** 신조 대금의 **20%**는 **해운사** 자체 부담

< 신규 지원방안 구조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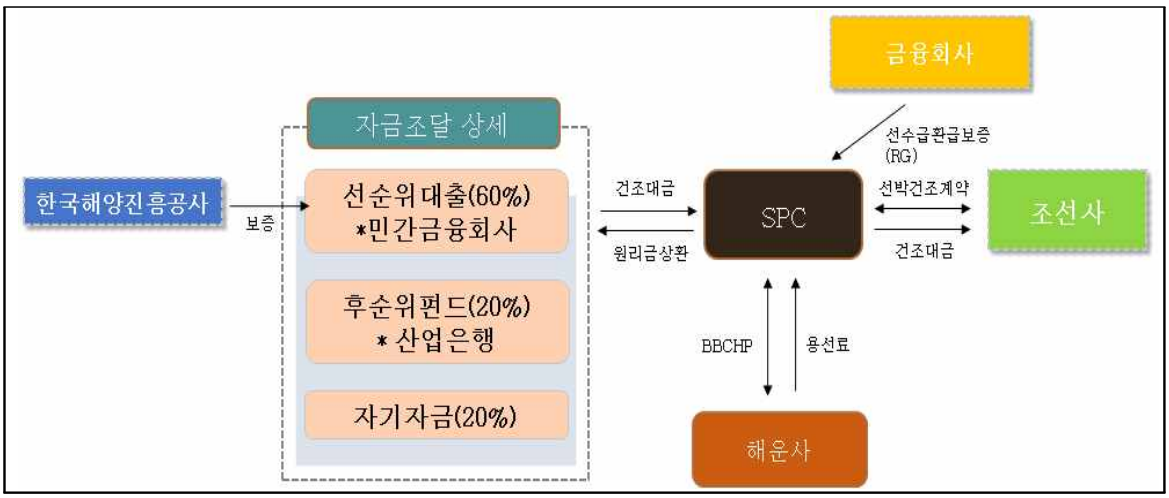

○ 해운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**만기 16년**의 **장기금융** 지원

- **(선순위) 15년 원리금 균등분할** 상환 (1년 거치 이후)

- **(후순위)** 해운사의 재무적 부담 등을 감안하여 **만기일시 상환**

< 별첨 > 기존 연안여객 · 화물선사 지원 정책

1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사업(해수부)

○ **(사업 목적)** 연안선박의 **안전 확보** 등을 위해 정부가 모태펀드 방식으로 출자하여 건조 지원

* 지원근거 :「해운법」 제38조·제39조(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조성 등)

○ **(지원 대상)**「해운법」상 내항여객운송업 및 내항화물운송업 면허 보유 해운사의 **신규건조 카페리, 초쾌속선** 및 **LNG추진 화물선**

○ **(지원 규모) '16~'19년간 출자규모 1천억원**으로 카페리선박 4척을 旣 지원하였으며, **'20년 예산규모는 530억원**

- 금년 예산(530억원)으로 **총 5척**의 **연안여객·화물선박** 지원 예정

* '20년 예산 530억원 : 카페리(2), 초쾌속선(2), LNG화물선(1) 건조지원 계획

○ **(지원 방식) 현대화 펀드**(후순위)가 **선박 대금**의 **50%**를 지원, **금융기관 대출**(선순위) **30~40%** 및 **해운사 자기부담 10~20%** 부담

i) **(선순위)** 민간금융기관과 해운사 간 **선박담보부 대출계약** 체결

ii) **(후순위)** 3년 거치 12년 균등분할상환

iii) **(해운사 자기부담)** 신조 대금의 **10~20%**는 해운사 자체 부담

선박펀드 구성	투자 방식

구분	비율
현대화 펀드 (정부출자)	50%
해운사 자부담	10~20%
금융기관 대출 (선박담보)	30~4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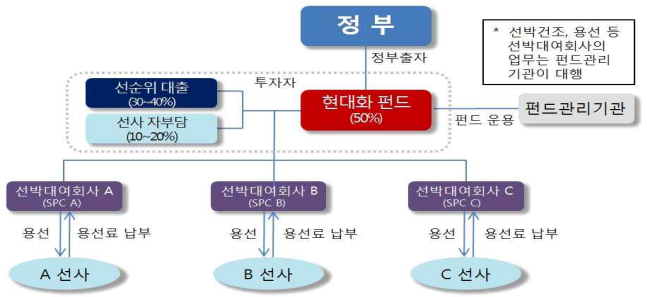

< 별첨 > 기존 연안여객 · 화물선사 지원 정책

2 연안선박 이차보전사업(해수부)

○ **(지원 대상)** 「해운법」 상 **내항여객운송업** 및 **내항화물운송업 면허** 보유 해운사 및 선박대여업자가 신규 건조하는 선박

○ **(지원 규모)** '13~'19년간 **예산 약 392억원**으로 총 112척(대출액 5,072억원)*을 旣 지원하였으며, '20년 예산규모는 **147억원**

* (**건조 완료**) **80개사 107척**(여객선 40척, 화물선 34척, 유조선 33척)
** (**건조 중**) **4개사 5척**(유조선 5척)

- 금년 예산으로 **10～15척**의 **연안여객·화물선박** 지원 예정

○ **(지원 방식)** 해운사가 **이차보전사업 수혜기업**으로 선정 시 **내항여객선·화물선**의 **신규건조 대출자금 금리 2.5%**를 지원

* 예) (총 대출금리) 3.5% - (이차보전) 2.5% = (해운사부담 이자율) 1%

3 연안화물해운사 유류비 보조사업(해수부)

○ **(목적)** 연안화물선에 대한 경유 **유류세액 인상분**(리터당 345.54원) **보조**로 내항화물운송업계의 **재정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 도모**

* 지원근거 :「해운법」 제41조제2항

○ **(지원 기준)** 유류세 보조금 = 주유량(ℓ) × 지급단가(현재 리터당 345.54원)

* 지급단가(원/ℓ) = 현재 경유유류세(원/ℓ) - '01.6월 당시 경유유류세(183.21원/ℓ)

○ **(지원 규모)** 최근 5년간('15～'19) **예산규모 약 1,250억원**(연평균 250억원)을 지원하였으며, '20년 예산규모는 **약 252억원** 수준

○ **(사업 절차)** 분기별 연안화물선 유류비 지원신청(화물해운사) → 신청서류 접수 및 심사(지방해양수산청) → 보조금 지급(지방해양수산청)

Ⅳ. 향후 계획

□ **연안여객·화물선박**에 대한 원활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**별도 심사기구**를 구성, **공정**하고 **투명**하게 **지원대상**을 **선정**

○ **산업은행·해양진흥공사**는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**연 2회***,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「**지원대상 심의위원회**」를 구성하여 지원대상 선정 추진

* (年 상/하반기) '20년 3월 및 9월 중 산업은행 및 해양진흥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계획 공고 예정

□ 금년 상반기 중으로 **해당 해운사**의 **신조 발주**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**속도감**있게 **사업 추진**

□ 기존 재정사업(해수부)의 **집행성과 등을 점검**하고, **펀드 출자규모* 및 이차보전 지원 확대**를 위해 '21년 예산 규모 검토 추진

* (당초 출자계획) '16~'19, 1,000억원 → (수정계획) '16~'23, 2,000억원

Ⅴ. 기대 효과

□ **해상안전 확보** 및 **연안해운업 경쟁력 제고**

○ 노후 선박의 신조 교체로 **해상여객·운송 안전성 제고** 및 **운항서비스 품질 향상**

□ **연관산업 고용 창출** 및 **지역관광 활성화**

○ 해운서비스 등 **연관산업 일자리 창출**

○ 최근 연안 관광수요 증가 추세에 부응하여 신조를 통한 **여객선 현대화**로 **지역도서 관광업 활성화**에도 기여

참 고 **연안여객·화물선박 신조 수요조사 결과**

□ **조사결과 : 59척, 8,231억원**(선가 기준)

○ 현재 **민간 선박금융**의 **낮은 담보인정비율(50%), 초기 자기자금 부담 과다** 등으로 **노후 선박 교체 지연중**

○ 기존 재정사업의 **규모**가 **부족**하고, 지원방식의 한계점* 보완 필요

* 해운사가 신조대금 중 자기부담분(10~20%) 이외에도 상당 수준(30~40%)의 자금을 자체적으로 민간금융회사 등에서 조달

○ 선가의 **80%** 수준 **장기금융 공급**시 **신조 수요**의향 표시

□ **조사 내용**

○ **조사기간** : '19.11.01 ~ '19.12.06

○ **조사대상** : 연안여객해운사, 내항화물해운사

○ **조사방법** : 한국해운조합 수요조사, 산은 현장 및 전화조사

< 선종별 세부 수요조사 결과 >

(단위 : 억원)

선 종		척 수	선 가
여객선	카페리	9	3,579
	쾌속선	5	2,220
	차도선	7	290
	소 계	**21**	**6,089**
화물선	화물선	38	2,142
합 계		**59**	**8,231**